

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남창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3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남창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
김경훈, 김규남, 김동욱,
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
김종길, 김지향, 김춘곤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민병주, 박상혁,
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
박춘선, 박칠성, 박환희,
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
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
아이수루, 유정인, 유정희,
, 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
이상욱, 이숙자, 이종배,
이종태, 이효원, 임춘대,
정지웅, 최민규, 최진혁,
한 신, 허 훈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52명)

1. 제안이유
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규정하고, 외국국적동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.
-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조의2)

나.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함(안 제6조제2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고향사랑의 날) ①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고 한다) 제9조제2항제3호”를 “법 제9조제2항제3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서울시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서울시의”를 “시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고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“서울시”를 각각 “시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9명이하”를 “9명 이하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“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”를 “초본, 국내거소신

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제2조(답례품의 종류) ① 「<u>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고 한다)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서울시</u>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, 서비스 및 유가증권 2. <u>서울시</u>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, 서비스 및 유가증권 3. 그 밖에 시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	<p>제1조의2(고향사랑의 날) ① 「<u>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<u>고향사랑의 날</u>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.</p> <p>② <u>서울특별시</u>(이하 “<u>시장</u>”이라 한다)은 <u>고향사랑의 날</u>이 포함된 주간에 <u>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</u>를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제2조(답례품의 종류) ① <u>법</u> 제9조제2항제3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서울특별시</u>(이하 “<u>시</u>”라 한다)----- ----- 2. <u>시의</u> ----- ----- 3. ----- -----

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고 한다)이 인정하는 물품, 서비스 및 유가증권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서울시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, 서비스 및 유가증권

2. 3. (생략)

4. 서울시에서 생산한 농·특산품 및 공예품

5. (생략)

제4조(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

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·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③ ~ ⑦ (생략)

제5조(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) ① (생략)

제6조(기금의 조성) ① (생략)

시장-----

② -----

-----.

1. 시-----

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4. 시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9명
이하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5조(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) (현행 제1항과 같음)

제6조(기금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

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확인

4.·5. (생략)

음)

②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초본,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-----

4.·5. (현행과 같음)